코리아리서치센터 용역협력업체 업무협약서

㈜**코리아리서치센터**(이하 "갑" 이라 한다)와 가온리서치(이하 "을" 이라 한다)는 "갑" 이 지정한 용역업무와 관련한 일에 대해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.

제 1 조 (목적)
본 협약은 "갑" 과 "을" 의 개별 용역계약에 필요한 제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상호간 성실히 그 의무를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 2 조 (존중 및 신뢰)
"갑" 과 "을" 은 상호 존중과 신의로써 본 협약의 이행은 물론이고 본 협약에 수반한 협력사항 발생 시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.

제 3 조 (업무협약 기간)
본 협약의 기간은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협약 해지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지속한다.

제 4 조 (업무협약 대상 및 개별계약)
1) "을" 은 "갑" 이 지정한 용역업무를 진행하고 결과물을 "갑" 이 지정한 일시에 "갑" 에게 제출한다.
2) 본 협약대상이 되는 개별 용역계약은, "갑" 의 개별 용역의뢰 내역, "을"의 견적제출 및 "갑" 과 "을" 의 개별 용역비용, 일정합의 등 제반 개별 계약에 관한 일체의 상호 간 전달문서로 갈음한다.
3) 업무협약 대상은 자료수집 및 자료처리, 문서작성, 프로그램 개발 등 모든 용역계약에 해당한다.

제 5 조 (개별 용역결과물의 검수, 수정 및 보완)
1) "을" 은 개별 용역업무 결과물 납품 이전에 "갑" 의 검수를 받아야 하며, "갑" 의 수정 또는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"을" 은 이를 성실히 수정 또는 보완하여, "갑" 이 지정한 일시에 납품하여야 한다.
2) "을" 은 검수에 입회할 수 있고, "갑" 의 검수합격에 의하여 납품의 책임이 완료한 것으로 한다.
3) "갑" 의 요청에 의거 작업중인 목적물의 보완, 수정의 요청이 있을 경우 "을" 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,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은 "을" 이 부담하기로 한다.

제 6 조 (개별 용역업무 지체 상금)
"을" 이 개별 용역업무이행 의무를 지체하였을 경우 지체일수 1 일에 대하여 용역계약 대금의 1,000 분의 3 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"갑"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 단, 개별용역계약 이행지체가 "을" 의 귀책 사유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.

제 7 조 (협약의 해지)
1) "갑" 은 다음 각 항의 경우 본 협약을 해제•해지할 수 있다.
① "을" 의 본 협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.
② "갑" 이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제출 및 기타 협조요구에 "을" 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경우.
③ "을" 이 개별용역업무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이의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

2 일이 경과하기까지 적절한 조치가 없는 경우.
④ "을" 이 "갑" 의 사전 승인 없이 개별용역계약에 대한 권리, 의무를 제 3 자에게 양도하였을 때.
⑤ 부득이한 사유로 쌍방이 본 협약을 상호합의하에 해지하기로 한 경우.

2) "을" 은 본 협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해지 시점에 이행 중인 개별용역계약으로 기 수령한 금액을 "갑" 에게 반환하여야 한다. 단, 1 항 5 호의 사유로 본 협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한 날로부터 2 일 이내에 이행 중인 개별용역업무의 정산서 및 작업물을 제출하여 "갑" 의 검사를 받아 기성부분에 대하여 정산한다.

제 8 조(변상의 책임)
"을" 의 귀책사유로 본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, "을" 은 이로 인하여 "갑" 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제 9 조 (개인정보보호)
본 협약 이행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규정은 '개인정보보호 이행 서약서' 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협약 해지와 피해보상의 사유가 될 수 있다.

제 10 조(정보보안 및 유출금지의무)

1) "을" 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"갑" 에 관한 모든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유출하지 않을 의무를 지며 "을" 의 직원 또는 대리인도 본 의무를 이행하도록 철저히 관리한다.
2) "을" 은 "갑" 에 관한 모든 정보 및 자료를 본 협약관계가 어떠한 사유로 종료되더라도 보안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"갑" 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"갑" 에 관한 모든 정보 및 자료를 반환하거나 파기하여야 한다.

제 11 조 (지적재산권)
본 협약에 의하여 제작된 제작물 및 각종 자료에 대한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"갑" 에게 귀속한다.

제 12 조 (관할법원)
본 협약이 포괄하는 개별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분쟁, 의견다툼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히 해결하기로 하며,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법률적인 소송을 제기할 경우, 그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.

이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 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여 협약당사자가 각각 1 부씩 보관한다.

2017. 11 .3

(갑)
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 길 12, 3 층
(역삼동, 허바허바빌딩)
㈜코리아리서치센터 대표이사 김 승 호 (인)

(을)
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73, 동양빌딩 4 층
가온리서치 대표 조 미 란 (인)